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하나로 TDF 2035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2. 효력발생일 : 2024년 6월 20일
3. 정정사유 :
 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최대손실예상액) 반영(표준편차 기준 8.68% → 97.5 VaR 기준 20.74%, 4등급 → 3등급)
 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4.03.01 시행) 반영
 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)
 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받지 못합니다.</u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<요약정보> 투자위험등급	4등급[보통 위험] 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(4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3등급[다소 높은 위험] 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(3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<요약정보>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입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입니다.
<요약정보> 투자자유사항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</u>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-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,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,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	-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,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,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

	<p>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8.68%로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 <p>&lt;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&gt; &lt;위험등급기준 분류표&gt;</p>	<p>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이 투자신탁의 시장위험(VaR)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예상액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은 20.74%로 시장위험 등급기준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 <p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&lt;시장위험 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* 사용)&gt;</p>
제2부. 11. 매입, 판매, 전환기준	<p>나. 환매 (1) 환매방법 &lt;신설&gt;</p>	<p>나. 환매 (1) 환매방법 &lt;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&gt;</p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: <u>연 1,200만원</u>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<u>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]</u></p>	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: <u>연 1,500만원</u>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<u>연 1,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]</u></p>

# 변경대비표

## 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하나로 TDF 2035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2. 효력발생일 : 2024년 6월 20일
3. 정정사유 :
 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최대손실예상액) 반영(표준편차 기준 8.68% → 97.5 VaR 기준 20.74%, 4등급 → 3등급)
 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

### 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요약정보> 투자위험등급	<u>4등급[보통 위험]</u> 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(4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<u>3등급[다소 높은 위험]</u> NH-Amundi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(3)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<요약정보>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입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입니다.
<요약정보> 투자자유지사항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